

우리나라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마542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Fingerprinting System in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 Combined with the Annot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24. 4. 25. Sentence, 2020 Hun-Ma 542 -

이 희 훈*

Lee, Hie-Houn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의 2020
헌마542 결정의 주요 판시 내용들 및
검토 |
| II.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연혁
및 검토 | V. 맺는 말 |
| III. 주요 선진국들의 실물 국가신분증에
지문 수록 여부 및 겉 표면에 외부 노출
여부의 비교법적 고찰 | |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먼저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국가가 강제로 발급하는 국가신분증 자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사회보장카드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 또는 증명하며, 이러한 사회보장카드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의 내부에 지문을 수록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보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

<https://doi.org/10.35148/ilsilr.2024..58.185>

투고일: 2024. 7. 15. / 심사완료일: 2024. 8. 5. / 게재확정일: 2024. 8. 5.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정교수, 법학박사

Full Professor of Law and Police at SunMoon University, Ph.D.

권을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강제적으로 전자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지문을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자적 IC칩 안에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수록시켜 놓고 필요시 공인된 리더기나 판독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의 겉 표면에 ‘지문’이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주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의 겉 표면 및 전자적 IC칩 안에 지문을 수록시키고 있지 않아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상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에 대하여,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로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상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서 개인의 열 손가락에 대한 평면 지문과 회전 지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모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향후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에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적절히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향후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지문’이라는 문구를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지문’ 또는 ‘모든 손가락의 지문’ 등으로 명확하게 해당 지문의 범위나 개수에 대하여 밝혀주는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상 타당하다.

[주제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법령, 실물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 전자적 IC칩,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I. 들어가는 말

김○○는 2003년 2월 24일 생으로, 2020년 2월 3일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강○○은 1985년 11월 20일 생으로, 17세가 된 해인 지난 2002년에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에 김○○과 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¹⁾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회전 지문과 평면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²⁾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³⁾(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의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 그리고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이 개인에게 노출될 경우에는 각종 범행에 악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IT 과학기술 사회에서 지문이나 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 방안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에 국가가 개인의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수집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 및 법익 균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강한 의문이 들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식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의문이라서 실물 형태의 주민등록증의 겉 표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

1) 2007년 5월 11일에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21년 7월 20일에 법률 제18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2) 2019년 2월 8일에 대통령령 제29511호로 개정되고, 2020년 10월 13일에 대통령령 제3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2009년 3월 10일에 행정안전부령 제67호로 개정되고, 2023년 1월 12일에 행정안전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켜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대상 조항들 및 피청구인인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 등 행위”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자신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⁴⁾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4월 8일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하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⁵⁾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에서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들 중에서 김○○에게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 등 행위가 각각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⁶⁾을 위반하지 않아서 청구인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동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이러한 3개의 주민등록법령상의 규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보관 등 행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헌법상

4) 이러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 배경과 의미 및 그 도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 등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9, 452-456쪽;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716-717쪽; 성낙인, 헌법학 제22판, 법문사, 2022, 1424-1437쪽; 이희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376-386쪽; 이희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17, 125-136쪽; 이희훈, 기본권론 초판, 박영사, 2019, 154-160쪽;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7판, 집현재, 2023, 349-355쪽; 한수웅, 헌법학 제12판, 법문사, 2022, 577-582쪽;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1판, 박영사, 2015, 408-409쪽.

5) 현재 2024. 4. 25. 2020헌마542 결정에서 사건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부분.

6) 이러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것은 권영성, 앞의 책, 345-348쪽; 김철수, 앞의 책, 370-371쪽; 성낙인, 앞의 책, 1092-1093쪽;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문집 제40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51-52쪽; 장영수, 헌법학 제9판, 홍문사, 2015, 512-519쪽; 이희훈, “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3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592쪽; 이희훈, “경찰청장의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에 대한 평석-”, 일감법학 제2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27-828쪽; 전광석, 앞의 책, 652-653쪽; 정중섭, 헌법학원론 제10판, 박영사, 2015, 369-374쪽; 한수웅, 앞의 책, 485-486쪽; 허영, 앞의 책, 290-301쪽.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에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기각 의견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의 인용 의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각하 의견으로 총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각각 나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렇듯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관한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에 대한 평석을 행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먼저 우리나라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한 연혁과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이하 II). 다음으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실물 주민등록증 제도처럼 실물 국가신분증 제도가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있다면 그러한 실물 국가신분증의 겉 표면에 우리나라의 실물 주민등록증의 겉 표면에서처럼 IT 과학기술 사회에서 내밀하고 중요한 개인의 생체 정보인 지문을 수록 내지 기재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설사 지문을 해당 국가신분증에 수록 내지 기재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물 주민등록증의 겉 표면에서처럼 보통 우측의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타인이 쉽게 그 누구나 알아보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에 노출시켜 기재 내지 수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의 비교법적 고찰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창적으로 새롭게 검토한다(이하 III). 그리고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관한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이하 IV-1). 또한 본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에 해당하는 판시 내용들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이하 IV-2). 끝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맺는 말 부분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여러 쟁점들과 그 개선방향들을 제시한다(이하 V).

II.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의 연혁 및 검토

1.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주요 제·개정 내용

먼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는 동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고, 1968년 5월 29일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비로소 도입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68년 9월 16일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라는 규정이다.

그리고 1975년 8월 26일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 그 자신이 ...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이후 오늘날의 동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1997년 12월에 주민등록법 제7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법에 ‘지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바, 이전까지는 주민등록법 자체에는 지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동법 시행령상의 별지로 된 공문서식에 의하여 지문채취가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지문 날인에 관한 규정이 주민등록법의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1968년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제1차 개정 당시에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주민등록 시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였다.⁷⁾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와 더불어 경찰로 이첩되었던 지문원지의 경우 1999년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7차 개정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제1항의 삭제와

7) 1968년 초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남하하여 사회적인 혼란과 위기감을 자극한 해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민통제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은 여당이었던 공화당을 동원하여 주민등록법을 한층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문날인이라는 제도가 주민등록법의 구조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다만, 이 당시에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오늘날과 같이 강제적 또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주민등록법령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인 지문날인 제도는 1970년에 제2차 주민등록법의 개정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법률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행 경찰청 예규 제247호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 등 자료관리 규칙에는 이미 삭제된 조항인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송부된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 등을 경찰청 수사국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경찰청 훈령 제2조 제1항),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의 접수는 송부표와 통계표를 대조·검토하여 그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동 훈령 동조 제2항).

이렇게 법률 차원에서는 해당 법 규정이 없었던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지난 1997년에 주민등록법 제9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법에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999년에 주민등록법 제10차 개정에서는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고 규정하였다.⁸⁾ 다만, 이때부터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서 오랫동안 수정 내지 변경 없이 계속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 차원에서 개인의 모든 손가락들의 지문(통상적으로 10개 손가락의 지문의 평면 지문과 회전 지문의 각각 10개씩 총 20개의 지문들)을 날인 내지 찍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2. 검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인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17세가 되면 강제적·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노란색 용지에 자신의 열 손가락의 평면 지문⁹⁾과 회전 지문을 모두 찍게 된다.¹⁰⁾

이러한 지문은 ‘만인부동성(萬人不同性)’과 ‘종생불변성(終生不變性)’이라는 특성¹¹⁾을 가진 각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생체정보에 해당한다. 이렇듯 개인의 내밀하

8)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년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2002, 5-8쪽.

9)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형성된 무늬’를 말한다.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10) 오마이뉴스,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2004. 03. 0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73147>, 검색일: 2024. 07. 10.

11) 먼저 지문의 ‘만인부동성’이란, 인간의 지문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는 의미로, 이러한 지문은 부모형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끼리도 상이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문 자체는 한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하나에 속한다. 한편 지문의 ‘종생불변성’이란, 지문상의 문형은 사람의 육체가 형성되는 시기에 융선의 배치에 의하여 결정되어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물론 지문은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 마멸되거나 창상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고, 극심한 창상 등에 의하여 피부 하부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지만,

고 중요한 개인정보¹²⁾에 속하는 지문을 한 두 개도 아닌 열 손가락 모두의 평면 지문과 회전 지문인 통상적으로 총 20개의 지문들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강제로 날인해 왔다.¹³⁾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5월 26일의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결정 및 2015년 5월 28일의 2011헌마731 결정 및 최근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에서 각각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에서 제시한 것과는 달리, 개인의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에 대한 규정과 경찰청장의 지문정보에 대한 보관규정 및 경찰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의 전산화 및 이러한 정보의 범죄수사목적에 이용가능 규정 등을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의 법률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밝혀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에 의해 수집된 범죄 등의 전력이 없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의 평면과 회전 지문을 그 범위·대상·기한 등의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으로 범죄수사의 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필요 최소한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만약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또는 범죄예방을 빙자하여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나 사찰 등으로 남용된다면 본 주민등록법에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는 수범자인 개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져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에서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저촉되어, 개인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헌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된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동일한 문형을 가진 지문이 재현된다. 문성도, “수사상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2, 12, 65쪽.

12) ‘개인정보’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뜻한다. Hufen, F. “Schutz der Persönlichkeit und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P. Badura/H. Dreier (Hrsg.),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Bd. II*, Tübingen, 2001, S.117. 그리고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보’란, 특정될 수 있거나 특정이 가능한 자연인의 인적·물적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렇듯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면 무엇이든 개인 정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BVerfGE 65, 1(46)*.

13) 경향신문, “임종인 의원, 주민등록 지문날인 폐지 추진”, 2007. 07. 22,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0707221122031>>, 검색일: 2024. 07. 10.

즉,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증의 신청 시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개인정보에 속하는 열 손가락의 모든 평면 지문과 회전 지문들을 강제로 날인해서 국가에 제공토록 하고, 이를 경찰청에서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일반적인 범죄수사의 목적 등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들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헌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된다.¹⁴⁾

Ⅲ. 주요 선진국들의 실물 국가신분증에 지문 수록 여부 및 겉 표면에 외부 노출 여부의 비교법적 고찰

1. 주요 선진국들의 실물 국가신분증에 지문 수록 여부 및 그 겉 표면에 외부 노출 여부에 대한 입법례¹⁵⁾

1.1 미국

미국에서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단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신분증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미국의 각 주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운전면허증은 없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신분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대신에 미국의 모든 주(州)들에서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 등과 연계되어 사용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가신분증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에는 바로 아래의 증빙 자료처럼 미국 시민들의

14) 同旨: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 513·2004헌마190(병합)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79-282쪽; 한상희, “국가주의와 주민통제 -주민등록법의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헌법 실무연구 제14권, 헌법재판소, 2014, 190쪽.

15) 본 논문의 III-1번의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독일·프랑스의 실물 국가신분증에 지문 수록 여부 및 그 겉 표면에 외부 노출 여부에 대한 입법례 부분에 대하여 각주에 각각 별도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러한 입법례에 대해서 저자가 새롭게 해당 입법례의 내용을 찾아서 독창적으로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주에 각각 별도의 출처를 표기하지는 않는 대신에 각각의 해당 본문에다가 관련 입법례의 규정들을 밝히고 연구했음을 밝힌다.

개인 지문을 겉 표면 자체에 우리나라의 실물 주민등록증에서처럼 기재 내지 수록하지 않고 있다.

1.2 영국

영국은 영국 국민들이 자신의 내밀하고 중요한 여러 개인정보들을 국가권력에 제공해 줘서 국가기관에서 많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하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과 같은 법 규범에 의하여 단일의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단행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의 지문날인을 일체 행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에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사용하는바, 이때에 한동네에 살고 있는 명망 있는 이웃의 서명이나 출생 신고서 등을 제출해서 이러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이나 선거 시에 필요한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증명을 행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개인의 소유 차량번호나 운전면허증 또는 은행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또는 가스나 전기 사용량 등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들만 각각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여러 생활상의 불편함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은 기꺼이 감내하면서 생활하고 있다.¹⁶⁾

1.3 독일

먼저 독일은 일단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의 제1조 제1항에 의해서, 독일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 해당되는 독일인은 16세가 되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및 이러한 신고의무 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자는 즉시 유효한 실물 형태의 국가신분증 안에 전자적 IC칩이 내장된 전자신분증(이하에서 “독일의 전자신분증”으로 줄임)을 소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독일의 전자신분증 소지자는 독일 관청에서 요청

16) 기록디자이너 김명재, “영국에는 주민등록제가 없다.”, <<https://m.blog.naver.com/obslove13/222378708281>>, 검색일: 2024. 07. 10.

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의 얼굴을 전자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비교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독일의 전자신분증을 발급한 관청 정보, 발급일, 유효기간, 전자신분증과 전자신분증의 리더기나 판독기 간에 통신할 경우에 권한이 없는 접근을 방지 내지 차단하기 위해서 임의로 부여한 6개의 숫자인 접속 번호, 이름, 박사학위(소지자에 한함), 생년월일, 출생지, 사진, 서명, 신장(키), 눈동자 색깔, 주소, 국적, 전자신분증의 일련번호, 종교적 예명(소지자에 한함), 지문(선택 사항)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서 이름, 박사학위(소지자에 한함),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종교적 예명(소지자에 한함), 개인의 선택 사항인 지문은 우리나라의 실물 주민등록증의 겉 표면에 타인이 쉽게 알아보기나 인식하여 각종 범행에 쉽게 노출시켜 놓지 않고 독일의 주민등록증의 전자적 IC칩 안에 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분증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해서, 16세 이상의 독일의 전자신분증 소지자는 본 전자신분증명을 이용하여 각종 공공기관 및 비 공공부문(민간부문)에서 전자적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프랑스

프랑스는 먼저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국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해당 프랑스의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최근 2021년 3월 15일에 유럽연합의 Regulation 2019/1157의 시행에 발맞춰서 전면 개편하여 프랑스의 전자신분증인 ‘Electronic National Identity Card’를 새롭게 최대 10년간 유효로 사용 가능토록 해서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최근 개선된 프랑스의 전자신분증의 뒷면에는 전자적 IC칩을 내장하여, 그 전자적 IC칩 안에 출생지와 상세한 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의 인적 정보와 지문 및 QR코드 등을 수록 내지 삽입시켜 놓고, 필요시 해당 리더기나 판독기를 통해서 공적 영역이나 민간 부분에서 사용토록 하였다.

다만, 해당 지문은 프랑스의 전자신분증의 전자적 IC칩 안에 강제적·의무적으로 수록 내지 삽입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개인의 지문은 최대 15년간 프랑스 내무부의 전산망에 수집 및 보관되지만, 개인이 제공한 해당 자신의 지문정보를 프랑스 내무부에 보관의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할 수는 있도록 하고 있다.

1.5 일본

일본은 2016년 이전까지 매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처럼 일본 정부에서 전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물 형태의 국가신분증과 1개의 단일한 통합적인 개인식별번호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새롭게 일본의 여러 각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의 식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호 대조하거나 기록 또는 입력하는 등에 걸리는 불필요하게 길었던 시간이나 노동력을 대폭 줄이고 각종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각종 행정 처리의 업무 시 소요되는 까다로운 해당 업무의 절차를 훨씬 간소화하고, 어떤 개인이 필요한 해당 행정 업무 등을 신청할 때 제출했었던 각종 개인 신원 확인을 위한 첨부되는 여러 해당 증명 서류들을 대폭 줄여주며, 이러한 서류들의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어, 일본 국민에게 개인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그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일본 국민에게 1개의 단일한 통합적인 개인식별번호인 정부 부여의 ‘마이 넘버(내 번호)’ 제도를 ‘행정절차상 개인식별을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동법 상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의 수록 내지 기재 사항으로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마이 넘버, 주소, 유효기간이고, 마이 넘버 카드에 내장된 전자적 IC칩 안에는 해당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발급된 마이 넘버 카드의 재질은 PVC이고, 마이 넘버 카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신분증 형태로 전자적 IC칩을 내장하여 전자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¹⁷⁾

다만, 이러한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의 겉 표면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겉 표면에 지문을 기재 내지 수록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의 뒷면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적 IC칩 안에도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지문은 수록하지 않고 있다.

17) 이희훈, “일본 마이 넘버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사점 연구”, 비교법 연구 제17집 제3호, 비교법문화연구소, 2017, 264-265쪽, 277-278쪽.

2. 시사점

먼저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제도 같은 것 자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신분 증명을 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같이 강제적으로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이 아닌 사회보장카드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안에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수록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제도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독일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전자신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의 ‘지문’과 같은 내밀하고 중요한 생체정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독일의 전자신분증 안에 기재 내지 수록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자적 IC칩 안에 해당 ‘지문’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삽입 내지 수록시켜 놓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의 공인 리더기나 판독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의 겉 표면에 ‘지문’이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 주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안에 지문을 강제적으로 수록해야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전자신분증의 전자적 IC칩 안에 해당 ‘지문’을 삽입 내지 수록시켜 놓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별도의 공인 리더기나 판독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의 겉표면에 ‘지문’이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 주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의 겉 표면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겉 표면에 지문을 기재 내지 수록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의 뒷면에 내장되어 있는 전자적 IC칩 안에도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지문은 수록하지 않고 있어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IV.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의 주요 판시 내용들 및 검토

1.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본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시 내용 및 검토

1.1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본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시 내용

먼저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에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의 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총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김형두·이은애·이종석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여러 명의 청구인들 중에서 김○○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전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때에 비로소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김○○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여 위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김○○의 지문 정보가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김○○은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김○○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김○○의 기본권 침해가 장래 확실히 예측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전단 및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된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지문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의 지문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는 이상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할 수 없게 되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송부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는 사람의 기본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주민등록법상 과태료의 부과 조항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제출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이 사건 규칙조항에 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를 다투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김○○에게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소수의 각하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검토

생각건대,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에서 김형두·이은애·이종석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제외한 6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법정 의견에서, “먼저 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의 지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전단 및 제40조 제4항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김○○이 위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라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김○○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김○○이 위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에게 보낼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므로, 김○○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김○○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

항에 따라 자신의 지문 정보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수집되고, 이렇게 수집된 김○○의 지문 정보가 이 사건 규칙조항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에게 송부되며, 이로써 경찰청장이 지문 정보를 보관·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김○○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이 사건 규칙조항에 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것에 동의한다. 이에 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본안 판단을 진행했던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 등 행위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시 내용 및 검토

2.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시 내용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기각 결정에서 법정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의 목적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이러한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의 범죄의 수사 목적상의 이용도 포함된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 내용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

압 및 수사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이 사건 규칙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상 근거로 든 여러 법률 조항들은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그 내용을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관 등 행위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관 등 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2.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시 내용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의 2020헌마542 결정에서 법정 의견에 의하면, “주민등록법령상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의 신원 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의 지문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범죄수사나 사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지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개인의 지문 정보를 국가에서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과 한 손가락 지문 정보만으로는 개인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다른 여러 개인의 신원확인 수단들 중에서 지문은 그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지문 정보와 비견할 만한 것은 현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 등 행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2.3 검토

먼저 이 사건 규칙조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의 집계표와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으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독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사무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기관인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는 행위는 기관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은 제26조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을 위한 사무 내지 주민등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이나 각급 경찰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또한 동일하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동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들을 선언하고 있으며(제3조), 정보의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제5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전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상 지문 정보를 모두 송부받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의 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대상자나 범죄혐의의 단서가 발견되어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그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인정보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의 목적이거나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경찰청장이 사전에 일반적으로 지문 정보를 송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또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규정들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범죄수사나 신원확인 of 필요성과 상관없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상 지문원지를 송부받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김○○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⁸⁾

한편 본 논문의 II-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원래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탄생한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원확인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자기식별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목적으로 개인의 지문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으로는 정확한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과 같이 간이하면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신원확인에 열 손가락의 지문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여권의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경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양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개인의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을 위한 개인의 신원확인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정보의

18)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마542 결정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의 이 사건 보관 등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부분 및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인용 의견 부분.

주체가 개인의 신원확인 등과 같은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스스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고,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강제할 것은 아니다. 설령 범죄의 수사 등 치안 유지의 목적을 위한 지문 정보의 수집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하더라도,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 그리고 범죄의 수사나 사고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에도 엄지손가락의 지문 대조만으로 충분히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비록 엄지손가락의 지문 손상 등으로 인해 이를 통해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이나 성별, 그 밖에 나타나 있는 주변 정보를 종합하여 신원을 식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인의 주변 정보로도 개인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열 손가락 지문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열 손가락의 지문 정보가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유지의 목적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거나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경우 또는 이미 범죄를 행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지문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에 대한 지문채취의 근거는 이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 감식과 같은 방식이 기존의 지문 채취의 방식보다 좀 더 정확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점차 활용되고 있는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원확인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⁹⁾

19)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마542 결정에서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부분.

V. 맺는 말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먼저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국가가 강제로 발급하는 국가신분증 자체가 없다. 그 대신에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사회보장카드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다른 신분증들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 또는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카드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의 내부에 지문을 수록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보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강제적으로 전자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지문을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자적 IC칩 안에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수록시켜 놓고 필요시 공인된 리더기나 판독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의 겉 표면에 ‘지문’이 쉽게 타인에게 노출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 주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의 겉 표면 및 전자적 IC칩 안에 지문을 수록시키고 있지 않아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크고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독립된 기관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사무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기관인 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는 행위는 기관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령상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는 주민등록에 대한 사무 내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이나 각급 경찰기관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전에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상 지문정보를 모두 송부받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 내지 경찰관의 일반적

인 임무 내지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죄수사나 신원확인 필요성과 상관없이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상 지문 원지를 송부받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²⁰⁾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낚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민등록증제도의 입법의 목적이거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지문을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지문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더라도 개인의 지문 정보의 인적 범위나 그 수집 범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낚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이밖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 목적은 개인의 정확한 신원확인을 통해 행정사무를 적정히 처리하여, 개인의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²¹⁾ 이러한 행정상의 목적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의 지문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열 손가락의 지문 정보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개인의 열 손가락의 지문 모두를 강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개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범죄수사 등 치안 유지의 목적을 위한 개인의 지문 정보에 대한 수집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 목적일 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 낚인을 강제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20)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마542 결정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인용 의견 부분.

21)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령은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을 그 누구나 상시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 자체가 반(反) 인격적인 제도임과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을 내면화시키려는 부정적인 입법의 목적이거나 가능으로 보는 견해는 김기중, “주민등록제도 이대론 안 된다”, 말 제158호, 월간 말, 1999, 144쪽.

조항은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²²⁾

생각건대,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지문 정보의 수집 범위는 법률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해석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간은 대체로 열 개의 지문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열 개의 지문은 모두 개인의 내밀하고 중요한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기본권적 보호가치가 매우 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령상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 상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에서 열 손가락의 평면 지문과 회전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모법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서 열 손가락의 평면 지문과 회전 지문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입법 취지나 그 입법 목적이 범죄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대상자나 범죄혐의의 단서가 발견되어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대한 소명과 함께 개인정보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특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수사기관에서 향후에 그러한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사전에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상의 지문 정보를 모두 송부받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활용하라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이나 경찰관의 일반적인 임무 내지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수사나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상 지문 원지를 송부받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에 각각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들을 각각 적절히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향후에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지문’이라는 문구를

22)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마542의 기각 결정에서 김기영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부분.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손가락의 지문’ 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지문’ 등으로 명확하게 해당 지문의 범위나 개수에 대하여 밝혀주는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9.
-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 성낙인, 헌법학 제22판, 법문사, 2022.
- 이희훈, 기본권론 초판, 박영사, 2019.
- 장영수, 헌법학 제9판, 홍문사, 2015.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7판, 집현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0판, 박영사, 2015.
-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년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2002.
- 한수용, 헌법학 제12판, 법문사, 2022.
- 허 영, 한국헌법론 전정11판, 박영사, 2015.
- Hufen, F. “Schutz der Persönlichkeit und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P. Badura/H. Dreier (Hrsg.), *50 Jahre Bundes verfassungsgericht, Bd. II*,
Tübingen, 2001.

2. 학술지

- 김기중, “주민등록제도 이대론 안 된다”, 말 제158호, 월간 말, 1999, 142-145쪽.
- 문성도, “수사상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2, 63-93쪽.
- 이희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373-393쪽.
- _____,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 513·2004헌마190(병합)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
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79-307쪽.
- _____, “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3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587-606쪽.
- _____, “경찰청장의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에 대한 평석-”, 일감법학 제2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11-847쪽.

_____,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문집 제40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43-66쪽.

_____,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17, 123-143쪽.

_____, “일본 마이 넘버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사점 연구”, 비교법 연구 제17집 제3호, 비교법문화연구소, 2017, 263-294쪽.

한상희, “국가주의와 주민통제 -주민등록법의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제14권, 헌법재판소, 2014, 164-238쪽.

3. 신문 기사

경향신문, 임종인 의원, “주민등록 지문날인 폐지 추진”, 2007. 7. 22,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0707221122031>>, 검색일: 2024. 07. 10.

오마이뉴스,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2004. 03. 0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73147>, 검색일: 2024. 07. 10.

4. 웹자료

기록디자이너 김명재, “영국에는 주민등록제가 없다.”, <<https://m.blog.naver.com/obslove13/222378708281>>, 검색일: 2024. 07. 10.

[Abstract]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Fingerprinting System in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 Combined with the Annot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24. 4. 25. Sentence, 2020 Hun-Ma 542 –

Lee, Hie-Houn *

Among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o not have national identification cards that are forcibly issued by the state, such as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cards, passports, or driver's licenses, and do not contain or write fingerprints inside these social security cards, passports, or driver's licenses, protecting or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more than in Korea. Among major advanced countries, Germany and France forcibly issu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s like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cards, but unlike Korea, fingerprints are autonomously or compulsorily included in electronic IC chips and recognized as authorized readers or readers if necessary, preventing "fingerprints" from being easily exposed to others and abused for various crimes, protecting or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more than in Korea. Unlike Korea, Japan's My Number Card does not contain fingerprints on the surface of Japan's My Number Card and in electronic IC chips, so the constitution protects or guarante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than Korea.

I think the fingerprint seal of ten fingers in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enforcement decree is essential and fundamental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at fingerprints are biometric information that indicates individuals' uniqueness and identity and cannot be changed arbitrarily. In the future, it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 Full Professor of Law and Police at SunMoon University, Ph.D.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to explicitly stipulate matters of flat and rotating fingerprints for individuals' ten fingers in Article 24 (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reasonable to establish an explicit basis for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Mayor, the Gun, and the head of the Gu should send a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to the district leader or the polic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in charge of the relevant person's resident registration site.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egal saving and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t is reasonable to make a legislative improvement that clearly reveals the scope or number of fingerprints, for example, "fingerprints within the minimum necessary" or "fingerprints of all fingers" stipulated in the main text of Article 24 (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Key Words]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Enforcement decree, Real resident registration card, Fingerprinting system, Electronic IC chip, Principle of Legal Saving, Principle of balancing test